

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의안 번호	2799
----------	------

박춘선 의원 (국민의힘, 강동3)

- ☐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 안녕하십니까? 박춘선 의원입니다.
- ☐ 본 의원과 이종태 의원님이 발의하고 22분의 선배 동료 의원님들이 찬성 연서한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,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
- ☐ 최근 초등학교 주변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와 각종 개발사업의 증가로 인해, 학생 안전에 대한 사전 대비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.
- ☐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는 「제4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(2025~2027)」을 통해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에서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특히, AI·IoT·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통합적 학교안전지원시스템의 구축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.

□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AI, 빅데이터, IoT 등 신기술 기반의 안전 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사고 예방 조항을 신설하여, 실질적인 교육안전 강화와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조례 개정을 통해 안전사고에 대해 선제적 대응을 해나가고자 합니다.

□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

안 제1조를 개정하여 조례의 목적 규정에 인용된 「교육기본법」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수정하였으며,

안 제10조 제3항을 신설하여 교육기관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, 인공지능(AI), 빅데이터, 사물인터넷(IoT) 등 기술 기반 시스템의 활용에 관한 교육감의 노력 의무를 명시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해나갈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.

□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, 서울시 교육환경이 보다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